

가든 그로브 시의회

의결 제 9460-17 호

가든 그로브 시의회의 레크리에이션 차량 주차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제정 결의

시의회는 2017 년 8 월 22 일 가든 그로브 시 법규집 제 10 편 제 10.56 장에 레크리에이션 차량에 적용되는 주차 제한을 가하는 제 10.56.115 조를 추가하여 동 차량과 관련된 공공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 제 2885 호를 채택했습니다.

가든 그로브 시 법규집 제 10.100.020(A)조는 시의회가 의결을 통해 주차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

시의회는 이에 따라 조례 제 2885 호로써 채택된 가든 그로브 시 법규집 제 10.56.115 조의 레크리에이션 차량 주차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제정합니다.

따라서 이제 가든 그로브 시의회는 조례 제 2885 호로써 채택된 가든 그로브 시 법규집 제 10.56.115 조의 레크리에이션 차량 주차 제한의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8 달러를, 1 년 이내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208 달러를, 그리고 첫 번째 위반 후 1 년 이내의 세 번째 위반 및 이후 각 위반에 대해 508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제정하기로 결의합니다.

또한,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벌금표를 제공하기 위해, 시 의정기록관은 본 의결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가 집행하는 최신 버전의 주차 위반 벌금표를 제작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할 것을 결의합니다.

2017 년 10 월 10 일 채택.

입회 증인:

/서명/ STEVEN R. JONES

시장

/서명/ TERESA POMEROY, CMC

시 의정기록관

캘리포니아 주)
오렌지 카운티) 다시 말하면:
가든 그로브 시)

나 TERESA POMEROY 는 가든 그로브 시 의정기록관으로서 캘리포니아 주 가든 그로브 시의회가 2017년 10월 10일 개최된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투표를 거쳐 상기 결의를 채택했음을 증명합니다.

찬성:	시의회 의원:	(7) BEARD, O'NEILL, NGUYEN T., BUI, KLOPFENSTEIN, NGUYEN K., JONES
반대:	시의회 의원:	(0) 없음
불참:	시의회 의원:	(0) 없음

/서명/ TERESA POMEROY, CMC
시 의정기록관